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대표발의, 2012106호)에 대한 검토의견

2018. 12. 28.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은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법관의 재판상·신분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법관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윤리 의식과 공정성이 요구됨.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비위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고, 그 징계절차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함.

하지만 현행 법관징계위원회는 징계결정에 필요한 과반수인 위원장과 3명의 위원이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렵고,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또한 단순히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대법원장의 재량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관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함.

따라서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를 과반수로 구성하며, 외부인사의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법관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 제2항 및 제5조제1항).

2. 검토 의견 : 개정 취지 찬성 및 일부 수정의견

가. 개정 취지 및 전반적 내용 찬성

법관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의식 및 공정성에 비추어 법관의 비위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징계절차에 있어서 고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비하여 현행법상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에서 그 과반이 현직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관에 대한 징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나아가 외부위원도 단순히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법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어 대법원장의 재량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를 과반수로 구성하는 것은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인사에 대하여도 개정안과 같이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등 외부인사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행사될 여지를 감소시켜 법관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개정방안이라 판단됩니다.

한편, 변호사 자격이 없는 2명의 외부인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도 양성 평등의 취지 등에 비추어 찬성합니다.

나. 일부 수정 의견

위 개정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2가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현행과 같이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중 법관 3명이 위원으로 임명되더라(제5조 제1항 제1호) 양성 평등 취지상 법관 3명 중 1명 이상은 여성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을 외부인사로 위촉하는 경우(제5조 제1항 제4호)에도 대법원장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외부인사를 위촉한다면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개정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장의 재량권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는 개정방안(예컨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언론계 대표단체장 및 여성계 대표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